

# ☎ 실업인정 업무 관련 고용센터 연락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서울고용센터	02-2004-7301	김해고용센터(밀양출장)	055-356-8226
서초고용센터	02-580-4900	양산고용센터	055-379-2400
서울강남고용센터	02-3468-4794	진주고용센터	055-753-9090
서울동부고용센터	02-2142-8924	진주고용센터(하동출장)	055-753-9090
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6000	진주고용센터(가창출장)	055-753-9090
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300	통영고용센터	055-650-1800
서울강서고용센터	02-2063-6700	거제고용센터	055-730-1985~7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700	대구고용센터	053-667-6007
서울관악고용센터	02-3282-9200	경산고용센터	053-667-6820~2
인천고용센터	032-460-4701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517
인천북부고용센터	032-540-5641	대구강북고용센터	053-606-8033
인천서부고용센터	032-540-2038	칠곡고용센터	054-970-1901~3
부천고용센터	032-320-8900	포항고용센터	054-280-3060~5
김포고용센터	031-999-0900	경주고용센터	054-778-2510~2
의정부고용센터	031-828-0900	구미고용센터	054-440-3330
구리고용센터	031-560-5800	김천고용센터	054-429-8904~5
남양주고용센터	031-560-1919	영주고용센터	054-639-1125~6
동두천고용센터	031-860-1700	문경고용센터	054-559-8213~4
양주고용센터	031-849-2326	안동고용센터	054-851-8057-9
고양고용센터	031-920-3937	광주고용센터	062-609-8500
파주고용센터	031-860-0401	광주광산고용센터	062-960-3200
수원고용센터	031-231-7864	전주고용센터	063-270-9100
용인고용센터	031-289-2210	남원고용센터	063-630-3900
화성고용센터	031-290-0813~5	정읍고용센터	063-532-8216
성남고용센터	031-739-3177	익산고용센터	063-840-6500
경기파주고용센터	031-799-2720~2	김제고용센터	063-540-8400
이천고용센터	031-644-3820	군산고용센터	063-450-0600
안양고용센터	031-463-0700	군산고용센터(부안출장)	063-581-7637
광명고용센터	02-2680-1500	목포고용센터	061-280-0500
안산고용센터	031-412-6902~5	해남고용센터	061-530-2905~6
시흥고용센터	031-496-1901~3	순천고용센터	061-720-9114
평택고용센터	031-646-1222~5	여수고용센터	061-650-0155
오산고용센터	031-8024-9811~2	광양고용센터	061-798-1914
안성고용센터	031-686-1711	대전고용센터	042-480-6000
춘천고용센터	033-250-1900	공주고용센터	041-851-8501
강릉고용센터	033-610-1919	세종고용센터	044-865-3219
속초고용센터	033-630-1919	논산고용센터	041-731-8600
원주고용센터	033-769-0901~3	청주고용센터	043-230-6700
태백고용센터	033-550-8651/3	청주고용센터(옥천출장)	043-730-4100
삼척고용센터	033-570-1903~5	천안고용센터	041-620-7400
영월고용센터	033-371-6251~2	아산고용센터	041-570-5512
부안고용센터	051-860-1919	충주고용센터	043-850-4003~4
부안동부고용센터	051-760-7100	제천고용센터	043-640-9314
부안북부고용센터	051-330-9900	음성고용센터	043-880-8600
부안사하고용센터	051-520-4921	보령고용센터	041-930-6200
창원고용센터	055-239-0900	서산고용센터	041-669-1919
마산고용센터	055-259-1500	제주고용센터	064-710-4465~8
울산고용센터	052-228-1919	제주고용센터(사귀포지소)	064-710-4490~4
김해고용센터	055-330-6400		

인터넷 실업인정

## Q9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이란?

-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을 통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인터넷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하여 상담을 할 수 없어 본인이 작성한 재취업활동계획서(IAP)에 따른 이행 여부나 향후 계획은 전송된 내용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당초 계획과 재취업활동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력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Step3.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자세히 보기 참고

## 💡 유의사항

1. “본인” 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발견 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였다라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www.ei.go.kr 인터넷 실업인정 메인화면



1.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접속하면 위 화면에 접속됩니다.
2. <개인회원>에서 회원인 경우에는 로그인하시고,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 개인회원으로 회원 가입한 이후에 다시 로그인 합니다.
3.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반드시 은행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 매뉴얼 참고하기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근로 제공 및 소득발생 신고방법, 구직활동 입력 시 유의사항, 작성 및 전송내용 확인방법,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 오른쪽 <자료실> → <홍보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자료실 (상단 오른쪽)
2. 홍보 자료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3. 다운로드

www.ei.go.kr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으로 쉽고 빠르게!



취업 또는 실업급여 수급완료 시까지 보관하면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Q1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란?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출석 원칙)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본인이 전송하는 것**으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재취업활동 등을 확인하여 실업인정이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또는 본인이 해외 여행 등으로 국외에서 신청할 경우 부정 수급에 해당되어 급여환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체류 중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서 해외재취업활동계획 수립 신고 후 가능)

## Q2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금융결제원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의 경우 거래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여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PC나 USB 등에 저장하였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참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은 상단 (자료실) → (홍보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Q3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 1 신청하기



고용보험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

① 실업인정 당일 00:00 ~ 17:00까지 반드시 전송

### 2 신청절차

-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 재취업 활동 내역 확인
-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 신청서 저장 및 작성 확인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확인)

※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입력하여 저장하시고, 수정 등을 위해 이전 단계로 이동은 상단 STEP ■를 클릭하면 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참고

## Q4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전송하면, 출석으로 갈음해 주는 인터넷 실업인정

### 1 당일 17:00까지 PC 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

- 1회에 한하여 실업 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
- ▶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

###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장애의 경우

- 전산장애 입증자료를 지참하고, 늦어도 다음 날까지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전날 전송한 것으로** 처리

신청절차 · 방법 및 유의사항

## Q5 (필요시) 구직활동 확인자료 파일첨부 방법은?

첨부할 파일이 있는 경우 <파일첨부>란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찾아 첨부하면 됩니다. 이메일 입사지원 등은 해당 파일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실행하여 파일을 생성 후 첨부하면 됩니다.

- ① 모니터 화면에 캡처할 화면을 띄운다.
- ② 키보드 위쪽 프린터스크린(Prt Scr) 버튼을 누른다.
- ③ (모니터 왼쪽 아래)에서 시작 →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그림판을 실행시킨다.
- ④ (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편집 → 붙여넣기(Ctrl+V)를 한다.
- ⑤ (그림판 상단 메뉴)에서 파일 → 저장(Ctrl+S)을 한다.
- ⑥ 저장된 파일을 구직활동 확인 자료로 첨부(등록)



## Q6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한 후에 회수하여 수정이 가능한지?

### 1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통상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나 다음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또는 다음 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신청화면에서 다음 실업인정일 확인 가능)

### 2 실업인정일 17:00 전, 신청서 수정을 원할 경우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민원처리현황 > 접수번호 클릭 > <회수>버튼 클릭 > 수정 · 저장 · 전송

### ② 당일 00:00 ~ 17:00까지 반드시 전송

17:00까지 전송하지 아니하면 불출석자로 처리되어 불이익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후 화면” 참고

## Q7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도 인터넷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이후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3차 실업인정일(10주)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 다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취업사실신고)에 취업일자를 증명할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Q8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불이행시 2배의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4대 보험 및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 등을 통한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